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17일,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2.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3.12.)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3.17.)

상정 ·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6.3.23.)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6.3.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 의원)

현행법은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학교폭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며,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5조의2 신설,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기념일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로서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개정안과 유사한 조문들이지만, 개정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직접 법률에서 몇 월 며칠로 기념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의 지정과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등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문가 등 의견 청취가 임의규정인 관계로 장애학생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현행법은 장애학생 여부와 무관하게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의사 등 관련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장애가 있는 피해학생은 현행법 체계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보장받을 수 있음.

다만,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현행법 제13조제5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제16조의2제2항(장애학생의 보호)은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임의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사 전달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객관적 입장에서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장애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과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특히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법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한병도 의원, 이기헌 의원, 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